

인천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가단2017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장근석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아시스 담당변호사 조영상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2022. 7. 21.

판결 선고2022.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7. 체결된 증여계약은 120,00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체결 및 연체

- 1) 원고와 D는 2018. 8. 30. D가 원고로부터 가계일반자금 50,000,000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2) 원고와 주식회사 E(당시 대표이사는 D이었다. 이하 'E'이라 한다)은 2018. 8. 30. E이 원고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 200,000,000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에서는 원고와 D 또는 E이 체결한 위 각 대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D는 E의 위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근보증하였다.
- 3) D는 2021. 6. 26. 이후, E은 2021. 3. 27. 이후(원고의 여신원장조회표의 '최종 이수일' 및 특수채권 완제예상조회표의 '발생 연체이자 계산내역' 중 시작시점에 의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D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 및 협의이혼

- 1) D와 피고는 1994. 10.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었다.
- 2) D와 피고는 2019. 5. 7. D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5. 8.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D와 피고는 2019. 11. 15.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D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D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위 아파트의 잔여 가액 중 D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2)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아니한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와 D가 2019. 5. 7.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약 6개월 뒤인 2019. 11. 15. 협의이혼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다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E은 원래 피고와 D가 공동대표인 개인사업자로서 2003. 11. 5. 개업 이후 계속 운영되어 온 사업체인 점, ② 위와 같이 피고가 공동대표인 개인사업자 E은 2017. 3. 31. 폐업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인 현재의 E이 설립되었는데, 이와 같이 E이 주식회사로 전환된 이후 피고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가 2018. 4. 6. D가 대표이사를 맡게 된 점(피고는 이전까지 피고가 51%, D가 4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고가 2018. 4. 6. D에게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E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③ 원고가 2018. 8. 30.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D만이 E의 대출금에 관한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와 D는 협의이혼 전 E 외에 인천 계양구 F에서 동태탕 음식점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협의이혼 이후 피고가 E과 위 동태탕 음식점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와 D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D는 E(즉 E의 주식 전부 및 그에 따른 경영권)과 동태탕 음식점을 보유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D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것은 실제로는 부부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하는 협의이혼한 부부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하며(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고와 D는 이후 2019. 11. 15. 실제로 협의이혼하였으므로 위 재산분할협의를 그대로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2) 나아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계양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피고에게 과대한 재산을 귀속시키는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이 속한 2019년 5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인천 계양구 G아파트) 내 같은 전용면적(68.05m²) 아파트의 매매거래는 5건으로, 그 실거래가는 2억 5,500만 원, 2억 4,900만 원, 2억 7,400만 원, 2억 7,800만 원, 2억 7,000만

원으로 평균 2억 6,520만 원(= 2억 5,500만 원 + 2억 4,900만 원 + 2억 7,400만 원 + 2억 7,800만 원 + 2억 7,000만 원 / 5)이었다. 따라서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또한 위 2억 6,520만 원이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¹⁾ ○ E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18. 12. 31. 기준 E의 자산 총계는 1,749,325,904원이고 그 중 부채는 927,573,467원이었는데 위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9. 12. 31. 기준 E의 자산 총계는 1,841,413,601원이고 그 중 부채는 877,375,330원으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E의 자산은 증가하고 부채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E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18년 E의 당기순이익은 297,781,998원이고 2019년 E의 당기순이익은 142,285,833원으로서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하고 있었다(2019년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E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이른바 분식회계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 또한 발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E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결과 D가 보유하게 된 E의 주식 전부와 그에 따른 경영권, 즉 E의 가치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2억 6,520만 원과 비교하여 적다고 보기 어렵다.

○ E은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1. 3. 27.경 이전까지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여 왔고, 달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D 또는 E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 E에 대한 'T'의 기업평가결과에 의하면 E의 기업등급은 2018. 7. 18. 기준 'BBB-'에서 2019. 6. 26. 기준 'BBB'로 상승하였으므로, 외부기관의 평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5. 7. 무렵 E은 앞서 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대출금 변제내역에서 드러나듯이 경영상태가 호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E의 기업등급은 2021. 4. 9. 기준 'D'로 대폭 하락하였으나, 이는 2020. 2.경부터 지속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영향으로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음식점 등 요식업체가 주 고객임을 추단할 수 있다) E의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한 데에 따른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5. 7.경 이미 E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 원고는, E의 자산 등에 대하여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D의 적극재산을 산정하는 데에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와 D가 협의이혼을 앞두고 2019. 5. 7.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의 일환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피고에게 과대한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인지 여부이고, 원고가 D의 재산(E 주식 등)에 대하여 용이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불과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원래 부부이었던 피고와 D가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여 오다가 2017. 3. 31.경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된 이후 2018. 4. 6.경에는 D가 그 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회사가 되었으며,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결과 D는 협의이혼 이후에도 계속하여 E의 주식 전부를 계속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D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D가 보유한 E 주식에 대하여 압류, 현금화 등 강제집행절차를 취함으로써 E의 부동산, 매출채권 등 자산 전로부터 원고의 대출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양승우

별지

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무자 D, 채권자 H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D가 위 증여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 가액은 위 2억 6,520만 원보다 적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19. 5. 7. 해지계약이 체결되었고 다음날인 2019. 5. 8. 말소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일단 이 사건에서 위 근저당권은 고려하지 아니한다.